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허용 안내

1. 관련

- 가. 「적극행정 운영규정」
- 나.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다.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3955(2021. 12. 23.)호 “제1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 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0790(2021. 9. 16.)호 “코로나19 유행 지속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허용 안내”

2.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법령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의료 이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허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 **(시행 배경)**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병상 수 감소,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
 -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 사용의 어려움 발생.
 - **(허가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임시로 허용함.
 -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변동***으로 인해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장비 사용을 '21.12.31까지 임시허용하는 적극행정**을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연장(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기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용을 임시로 허용).
- * 공동 활용할 것을 동의한 의료기관의 폐업, 병상 수 감소, 종별 전환 등
 ** 전국 시·도, 전국 보건소에 공문 시행('21. 9. 16.)

-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용을 임시로 허용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전국 시도, 전국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학협회,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무관 오혜인 행정사무관 김태경 의료자원정책과 전결 2021. 12. 27.
장 송영조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정책과-13898 (2021. 12. 27.)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64 팩스번호 044-202-3925 / wisvolent312@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